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주요내용과 과제*

張 允 齊**

〈 目 次 〉

I. 서론	IV.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평가 및 향후 과제
II.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의의	V. 결론
III.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주요 내용	

[국문초록]

2023년 12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1월 공포되었으며,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의 개정이 2024년 2월 예고되어 동년 3월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은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와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감면의 여지를 두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강화는 금융 소비자 보호에 무게를 둘 수 있는 개정이 될 것이다.

개정 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의 기준 마련만을 의무화하고 그 실효적인 구축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던 반면,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법률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에 관한 의무를 두고 있다. 이는 판례에 의해 법리가 받아들여진 이사의 내부통제체계 구축 의무를 법제화한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의 역할을 기능별로 분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규정화하여 선진적 지배구조 확립에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판례를 통해 내부통제체계 구축 의무가 확립된 상황에서 지속적인 규제의 추가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운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24. 2. 15. ‘기업가치향상을 위한 기업법제의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기업법학회와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이 주최한 2024년 한국기업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학회 당일 좌장을 맡아 주신 김순석 교수님, 훌륭한 토론을 해주신 건국대 권용수 교수님과 전남대 박인호 교수님, 고견을 주신 최준선 교수님과 손영화 교수님, 그리고 익명의 심사위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논문은 저자의 학술적 견해로 소속 기관의 공식적 입장과 무관함을 밝힙니다.

**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ESG연구소장, 법학박사

이에 이 논문에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개정 내용을 검토하여 동법의 지배구조 지도 및 원칙중심규제로의 전환에 대한 과도기에서의 역할에 긍정적인 기능을 확인하면서도, 향후 과제로서 업종별 지침 개발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감독규정 구체화, 이해관계자가 내부통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시제도의 지원을 제안하였다. 향후 금융당국의 지원 및 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각 회사의 경영환경에 적합한 내부통제체계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금융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I. 서론

2023년 12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1월 공포되었다. 개정 법률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의 규정변경예고가 2024년 2월 공고되어 동년 3월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2015년 제정되어, 2016년부터 임원 및 주요업무집행자의 선임, 겸직 제한과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왔으며, 특히 법령준수, 건전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부여하였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금융회사에 대해 부여하는 지배구조와 관련한 의무들은 상법 회사편에 규정된 주식회사 및 상장회사에 관한 지배구조의 규율 내용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의무들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비금융 상장회사에 비해 바람직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¹⁾

- 1) 실제로 한국거래소의 ESG 평가 종합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ESG 평가기관은 상장 금융회사에 대하여 평균 이상의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KCGS의 경우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별도로 평가하고 있으며, 타 ESG 평가기관은 기업지배구조 평가결과가 아닌 ESG의 종합 평가결과만이 공개되고 있으며, 해외 ESG 평가기관은 국내의 전체 평가대상회사를 업종별로 상대평가하므로 이 평가결과를 단순히 참고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한국거래소, 기업 ESG 등급, <https://esg.krx.co.kr/contents/02/02020000/ESG02020000.jsp>.

〈표 1〉 주요 상장 금융회사 ESG 평가 등급(KCGS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평가 등급)

회사명	국내 ESG 평가			해외 ESG 평가		
	KCGS	한국ESG 연구소	서스틴 베스트	Moody's	MSCI	S&P
KB금융	A+	A	A	38	AAA	86
메리츠금융지주	B+	B+	C	-	B	4
신한금융지주	A+	A	AA	44	AA	77
우리금융지주	A	A	A	45	AAA	76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기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관련 규율은 “형식적·절차적 의무”로 인식될 뿐 실제 영업을 담당하는 실무부서 관리자와 직원들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²⁾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응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2022년 8월부터 약 10개월간 학계와 법조계의 전문가들과 금융회사들이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방안의 추진 결과로 보인다.³⁾

이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은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와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감면의 여지를 두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강화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무게를 둘 수 있는 개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규제의 추가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운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⁴⁾

이에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본연의 목적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 경영의 건전성과 시장의 안전성, 금융소비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을지 개정 내용을 검토하여 그 과제를 살피고자 한다.

II.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의의

1.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특수성

1.1. 금융소비자의 위험 부담

통상 경영학에서 주주는 기업의 경제적 소유자로 본다. 주주가 주식을 소유하고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A	A	A	38	AA	82
한국금융지주	B+	B+	BB	14	B	17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년 말부터 금융회사 임원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부여 받게 됩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3. 12. 8.

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에 주력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3. 6. 22.

4)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사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을 CEO에게 몰아,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법률신문,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연내 통과 가능성”, 2023. 11. 25.

의 경영을 주주가 선임한 이사가 하는, 즉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에서 주주는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에 대해 의결할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⁵⁾ 이는 회사의 재무적 자원의 유입과 유출에 있어 종업원 및 채권자 등 기타의 이해관계자는 수익성과 위험성이 크지 않고 주로 고정된 수입 및 고정된 위험을 부담하며 선순위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주주는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늘어날수록 그 수익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가장 후순위로 재산분배청구권을 행사하게 되어 위험을 가장 많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우리 상법 역시 제538조에서 주주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이론과 동일하게 주주의 위험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하도록 하여 주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유형자산과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이 재무제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 및 무형자산이 못지않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서비스업 모두 전술한 바와 같은 일반적인 위험의 분배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고객과 소비자는 대가를 지불하고 해당 회사의 서비스 또는 재화를 향유하게 되므로 소비자의 위험은 적어도 해당 서비스 또는 재화의 기본적인 가치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경우, 대부분 재무제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은 금융자산으로서 이러한 금융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금융소비자가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되는 동시에, 금융상품의 내재적 위험성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위험은 주식회사의 주주와 동일하게 출자한도 내에서 제한없는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서 잔여 위험을 부담하는 주주를 주요 이해관계자로 고려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서는 주요한 위험 부담자인 금융소비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2. 예금자보호의 중요성과 시스템 리스크의 방지

전술한 바와 같이 금융회사는 대부분의 자산이 일반 국민의 예금 등의 자금으로 조성되는 한편, 예금자보호제도가 도입되어 있어 금융회사의 도산에 따른 예금자 등의 위험이 제도적으로 담보되어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지배주주 또는 경영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금자 등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예금자 등의 감시유인은 비교적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금융회사는 전문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금융산업은 본질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 불완전경쟁, 외부효과 등의 특성으로 인해 시장 실패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⁶⁾

이러한 시장실패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실은 전체 금융산업으로 파급될 수 있다. 이는 개별 금융회사의 손실은 다른 금융회사의 손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실물경제의 충격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

5)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모범규준”, 2021, 97면.

6) 정기승, 「금융회사 지배구조론」, 홍문사, 2007, 98-99면.

리스크의 사례로는 1930~1933년 대공황, 1974년 독일 Herstatt 은행 부도로 인한 글로벌 은행 연쇄 부도 사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볼 수 있다.⁷⁾

1.3.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중요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역시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와 경영진의 사익편취 문제를 기본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지배주주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경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회사 이해관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문제가,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경영자가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문제가 지배구조에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가 될 것이다.

금융회사에서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의 이익과 상충하지 않아야 할 이해관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소비자의 이해관계일 것이며, 이를 위해 공공성의 측면에서 더욱 강하게 규율할 필요성이 요구될 수 있다. 이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는 금융규제적 관점에서는 건전성규제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는 금융회사의 개별 금융회사의 미시적 건전성 보호와 금융시스템의 거시적 안정성 보장, 그리고 금융소비자의 보호라는 세 가지 기능을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⁸⁾

이처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보호하여 더욱 중요하게 강조된다. 이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그 목적을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며 일반 주식회사에 비해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연혁

2.1. 6개 금융업법에 따른 지배구조의 규율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큰 특징은 기존에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지주회사법의 개별법규에서 규정되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을 하나의 단행법으로 일관된 원칙을 정하였다는 것이다.⁹⁾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장 이전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위 6개 개별법에 의해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이 지속적으로 개정

7) 이효섭, “증권업 시스템리스크 진단 및 대응과제”, 이슈보고서 20-13, 자본시장연구원, 2020, 1-2면.

8) 정순섭, “금융회사의 조직규제”, 상사판례연구 제24집 제2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11, 11-12면.

9) 정영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상 고려사항 및 앞으로의 개선사항”, 금융감독연구 제3권 제1호, 금융감독원, 2016, 167면.

되며 보완되어 왔다.

2.2. 금융회사 모범규준을 통한 행정지도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실패가 금융시스템의 직접적 위험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예금자 및 금융감독당국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표성과 책임성이 부각될 필요가 있다는 인지 하에,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선진화 방안을 위하여 2013년 4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구성하였다. T/F는 7차례 회의를 통해 같은 해 6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¹⁰⁾ 이를 기초로 2014년 11월 20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하였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행정지도의 형태로 적용되었으며, 금융위원회는 2015년부터 금융회사로 하여금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내용이 포함된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연차보고서는 comply or explain 원칙에 따라 미준수 시 합리적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였다.¹¹⁾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내용은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기업지배구조원(現 한국ESG기준원)에서 제정하였던 당시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 유사하며, 중복되는 부분이 다수이다. 또한 현재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가이드라인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다루는 사항과도 다수 중복된다. 또한 comply or explain의 운영방식은 현재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와의 유사하여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의 시작 단계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국회에 계류중이었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일반원칙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으나, 법안은 모범규준과 일부 상이하여 후속조치를 통한 유기적 작동이 기대된다는 견해도 있었다.¹²⁾ 이는 모범규준이 시장에서의 자율적 규제 형태로 이행될 것을 기대한 견해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에 의한 행정지도라는 점과 이후 대부분의 내용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의해 법제화되었다는 점에서 애당초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시장에 의한 규율을 지속하기보다 이후 법제화의 연착륙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2016. 8. 1.) 전일까지 행정지도가 존속된 후 폐지되었다.¹³⁾

1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2013. 6. 17.

1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Financial Corporate Governance Code)」 시행”, 2014. 12. 24.

12) 정혜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의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CGS Report」 5권 7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5, 19면.

1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행정지도 존속기한 연장”, 2015. 12. 24.

2.3. 2015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제정

2006년, 재정경제부의 통합금융법 도입 발표 이후 금융선진국의 추세에 따라 통합적으로 금융업을 규율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금융기관의 핵심업무가 명확히 구별되므로 업종마다 상이한 규율체계를 가져야 한다는 반론이 있었다. 이후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감독방법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통합금융규제에 관한 논의는 잦아들었다.¹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보수정책의 규범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대한 공청회를 2010. 6. 23. 개최하고 이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제정에 착수하였다. 2011. 12. 16.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 중에 정부안의 내용과 다소 다른 많은 관련 법안이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아래와 같이 발의되었다. 2012년 정부안 및 15개 의원 발의 법률안 등 16개의 법률안을 대체하여 2015. 4. 국회 정무위원회는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였고, 이 정무위원회 대안이 2015. 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5년 7월 31일 공포되어 2016년 8월 1일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되었다.¹⁵⁾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기존의 6개 법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규율하던 사안을 한 법으로 통합한 것으로, 통합의 이유는 규제형식적으로 금융기관의 업종에 따른 지배구조의 차이를 없이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즉, 개별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나는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금융업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¹⁶⁾

그러나 이러한 통합적 규율은 각 업종에 따른 금융상품의 다양성과 그에 따른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이해관계자의 다양성, 그리고 지배구조에서 중요하게 살펴야 할 사안의 상이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우려가 있다. 이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작동함에 있어 실제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의 목적인 금융소비자보호에 장점을 발휘하였는지, 그리고 금융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회사에서의 내부통제 실패 및 금융시장의 더딘 발전이 지속되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문제점을 확인할 필요가 보이게 되었다.

14) 박영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보험법연구 9권 2호, 한국보험법학회, 2015, 164-167면.

15) 박영준, 위의 논문, 164-168면.

16) 박영준, 위의 논문, 162-163면.

3. 기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문제점

3.1. 업종별 규제 통합의 문제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의 업종별 규제 통합은 2006년 제정경제부의 통합금융법의 도입의 일부 실현이라는 반응이 제기되며, 이러한 통합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특히 지배구조에는 정답이 없으며 자율적인 지배구조 운영이 중요하다는 국제적 동향과 함께, 미국의 금융개혁법에서도 다양한 금융감독기구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금융개혁이 추진됨에 따라 세계적인 금융개혁의 추세와는 상당히 괴리된 입법이라는 평가도 제기되었다.¹⁷⁾ 또한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의 유형별로 위험의 정도가 차이가 있으므로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은 그 당면하는 위험의 정도 및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도 상이한데에 비하여, 규모별 차이만 고려하여 조문별 적용의 차이를 두는 것이 적절한 입법체계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¹⁸⁾

3.2. 구체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법적 의무 부여 제한

기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하게 경영을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금융회사에게 ‘내부통제기준의 마련의무’는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마련된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금융회사들은 각 회사의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작동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업계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기존 법령상 내부통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법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되었는데, 시행령상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위한 업무분장과 조직구조, 업무수행절차, 이사회와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 등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금융회사들은 법령상 요구되는 형식적인 요건에만 신경쓴 것으로 평가된다.¹⁹⁾ 이 때문에 금

17) 원동욱, “세계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금융기관 지배구조”, 기업법연구 제25권 2호, 한국기업법학회, 2011, 182면.

18) 김병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에 관한 검토”, 금융법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금융법학회, 2016, 27면.

19) 김흥기, “내부통제의 작동 원리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 상사판례연구 제36권 제4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23, 79-80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위반만을 판단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내부통제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즉 특정 사항에 관한 ‘준수의무’ 위반까지 판단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이는 현재 상법상 이사의 감시의무로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판례를 통해 인정된 상태에서 한정된 규제체계로 인식되었다.²⁰⁾

III.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주요 내용

1. 내부통제위원회의 신설 및 이사회에 내부통제 감독 의무

1.1. 내부통제위원회의 신설

제22조의2(내부통제위원회) ①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내부통제위원회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과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대표이사등이 각각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가 아닌 감사위원회나 위험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이사회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를 제외하고, 전술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회사의 경우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

20) 김성균,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에 관한 법적 소고”, 상사판례연구 제34권 제4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21, 149-150면; 정준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규제체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을 중심으로-”, 경제법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경제법학회, 2021, 278-279면.

도록 하였다.

기존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부통제위원회는 위원장을 대표이사로 하는 위원회로서, 이사회 내 위원회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지 않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대응을 겸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또는 준법지원조직의 하나로서의 내부통제위원회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둬으로써, 감독 기능을 하는 이사회와 업무집행 기능을 하는 경영진으로 이원화된 대규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서 대표이사가 내부통제를 총괄하고 이를 이사회가 감독하되, 이사회 내 위원회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역시 “이사회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 추가,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구체화하였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이 명확화 됨에 따라 지배구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함으로써 이러한 취지를 드러낸 바 있다.²¹⁾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은 ①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의 수립, ②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 정착방안 마련, ③지배구조내부규범의 제정 및 개정, ④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으로 규정되고 있다. 또한 내부통제위원회는 하여금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와 대표이사가 내부통제와 관련한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 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었다. 이에 향후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위원회에 관련된 업무의 보고를 수행해야 할 것이며, 내부통제위원회는 해당 업무보고에 대해 합리적으로 정보가 준비되고 보고되는지 확인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보고사항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만 위의 사항을 감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경우, 정관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감사위원회와 위험관리위원회가 공통적으로 재무, 회계 및 위험관리의 역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동 업무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하고 많을 경우 다수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이사회의 구성원이 적을 경우에는 다수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이사의 충실한 업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자사의 이사회 규모와 역량을 고려하여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년 말부터 금융회사 임원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3. 12. 8., 3면.

1.2. 이사회와 내부통제 감독 의무

제15조(이사회와 권한)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와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5의2.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④ 이사회는 제30조의4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

또한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이사회와 권한으로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후술하는 대표이사의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를 감독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다. 기존에도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와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으나,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관련 기준의 개폐뿐만 아니라 정책의 수립 및 감독을 통하여 수립된 기준이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기제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사회가 대표이사 및 회사를 감독함에 있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직접적으로 감독하게 함으로써, 판례에 의하여 구체화된 이사회와 내부통제 감시의무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내부통제가 필요한 사업영역 및 운영절차는 복잡다기하며, 어느 분야에 있어 이사회가 어느정도로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의 입장에서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사노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광고와 관련한 내부통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련한 내부통제, 담합과 관련한 내부통제 등에 있어 이사가 어느 분야에까지 내부통제체계 감독이 있어야 할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감시의무는 준법통제뿐만 아니라 위험관리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통틀어 일컬어질 수 있으므로 이사회에게 지나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닐지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이사회 및 내부통제위원회가 준법 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요구하고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서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후술하는 대표이사의 책임으로서도 주의해야 할 사안이다.

2. 책무구조도의 도입 및 이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제30조의2(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① 금융회사의 임원(해당 금융회사의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을 포함하며, 금융회사의 자산규모, 담당하는 직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을 제외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의3 및 제35조의2에서 같다)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이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등”이라 한다)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2. 내부통제기준등이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3. 임직원이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알게 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사항이나 내부통제등에 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준하는 조치로서 내부통제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조치
- ② 금융회사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표이사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2. 제1항에 따른 관리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통제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조치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의3(책무구조도) ①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등은 제30조의2에 따른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이 법, 「상법」, 「형법」, 금융관계법령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무를 배분한 문서(이하 “책무구조도”라고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책무구조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책무별로 담당하는 임원이 반드시 존재할 것
 2. 제1항에 따른 책무별로 담당하는 임원이 복수로 존재하지 아니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요건으로서 내부통제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 ③ 대표이사등이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 ④ 금융회사는 대표이사등이 마련한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책무구조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을 정정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3. 기재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제출된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작성방법, 기재내용, 제출방법 및 정정·보완 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의 임원은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 책임자를 말하며,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이러한 임원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본인의 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적정 마련 여부와 효과적 집행 운영 여부 점검을 요구한다. 또한 임직원이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점검할 것을 요구하며, 시정 및 개선 조치를 하고 대표이사에게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등을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컴플라이언스와 관련한 3선 방어의 이론 중에서 항상 현업 부서의 역할과 이를 담당하는 경영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적절히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3선 방어를 적용할 때에는 1선을 현업부서, 2선을 내부통제 전담부서, 3선을 지배기구로 보는 견해²²⁾와 1선을 현업부서, 2선을 준법기준 제정 부서(또는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를 포함한 중간부서), 3선을 내부감사로 보는 견해²³⁾가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현업부서에서의 역할이 중요한 방어선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며, 현업부서와 준법기준 제정 부서 모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의 임원에 의해 운영될 것이다.

개정 지배구조법은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을 통해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화하고자 한다. 이는 금융당국의 획일적인 규율이 아닌, 금융회사가 스스로 각자의 특성과 경영여건 변화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들의 관심과 책임감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대표이사(CEO)가 책무의 중복·공백·누락없이 마련해야 하며, 작성된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22) 김유경,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역할 (2) 내부통제 및 부정위험 감독, 올바른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역할”, 삼정KPMG, 2017.

23) 안수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체계 확립방안 모색 -은행을 중심으로-”,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71호, 법무부, 2015, 76면; 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 “세계내부감사인협회(IAA) 3선 모델”, 2020, 4면.

해당 임원의 책무가 명확해짐에 따라 금융회사는 임원이 해당 책무수행을 위한 전문성, 정직성, 신뢰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도 부담하게 된다. 책무구조도 제출은 법 시행후 6개월 후부터 은행·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금융업권·규모별로 시행시기를 달리하여 규모가 큰 금융회사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표 2〉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점²⁴⁾

은행	지주	금융투자업	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	저축은행
전체	전체	자산총액 5조원↑/ 운용재산 20조원↑ + 종금사	자산총액 5조원↑	자산총액 5조원↑	자산총액 7천억원↑
		자산총액 5조원↓/ 운용재산 20조원↓	자산총액 5조원미만	자산총액 5조원↓	자산총액 7천억원↓

* □ 1단계(법 시행후 6개월전까지 제출) → □ 2단계(1년) → □ 3단계(5년이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

3.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 부여

제30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①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등의 전반적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여야 한다.

1. 내부통제등 정책·기본방침 및 전략의 집행·운영
2. 임직원이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 및 그 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3.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사실을 대표이사등이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보·신고 및 보고 등에 대한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4. 각 임원이 제30조의2에 따른 관리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5.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6.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이 장기화 또는 반복되거나 조직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관리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사항이나 내부통제등에 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등 필요

2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년 말부터 금융회사 임원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부여 받게 됩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3. 12. 8., 2면.

한 조치

8. 그 밖에 내부통제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②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2. 제1항에 따른 관리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통제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임원이 보고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조치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대표이사로 하여금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최종책임 책임자로서 정책 및 기본방침, 전략의 운영과 자원 배분, 자원 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내부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책무구조도에 따른 임무 수행 여부 점검,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총괄적으로 실효성있게 관리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대표이사는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관리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통제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임원이 보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 및 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제35조의2(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임원이 제30조의2를 위반하거나 대표이사등이 제30조의4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조치(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는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재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행위의 발생 경위, 정도와 그 결과
 2.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제30조의2 또는 제30조의4에 따른 관리의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원 또는 대표이사등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34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는 제3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임원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관련 의무를 위반하거나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해당 임직원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게 대한 조치는 제외하며 이는 조치의 대상이 임원 이상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때, 임원 또는 대표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관리의무를 수행한 경우 제재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IV.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평가 및 향후 과제

1.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평가

1.1. 대규모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이해 확립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이사회와 대표이사, 임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구분을 통해 대규모 상장회사로서의 기업지배구조에서 역할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전통적으로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이론에서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과 경영전략에서의 지도 역할을 하며, 대표이사는 업무집행을 총괄하고 경영진은 각 분야별 업무집행을 하게 된다.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에 관하여 이러한 역할을 기능별로 분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규정화하였다는 데에서 선진적 지배구조 확립에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지배구조는 사외이사가 다수인 감독형 이사회가 있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한정된 것으로 기업의 성장 규모가 성숙되기 전 사내이사 중심의 집행형 이사회로 구성된 회사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비록 대규모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이해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이러한 입법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모 및 성숙기에 이르지 않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률적 지도 역할에 있어서는 별도의 역할 또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1.2. 내부통제의 체계 구축

개정 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의 기준 마련만을 의무화하고 그 실효적인 구축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던 반면,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법률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에 관한 의무를 두고 있다. 이는 판례에 의해 법리가 받아들여진 이사의 내부통제체계 구축 의무를

법제화한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으로 보인다.

특히 책무구조도를 통한 각 임원의 책임 명확화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책임 규정은 실효성있는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을 입법화한 것으로 수범자로 하여금 명확히 따를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례를 통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적 의무가 된 사항을 별도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을 수 있다. 수범자로 하여금 명확한 법적 의무를 알려줄 수 있다는 데에는 의미가 있으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성문의 의무화는 아닐까 하는 의문이 있다.

2.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과제

2.1. 내부통제의 목적 및 내용적 구분

전술한 바와 같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제도의 감독 및 관리에 대해 이사회, 경영진에 대해 각각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금융회사가 직면하는 모든 위험이 내부통제제도의 통제위험에 해당할 수 있다.²⁵⁾ 또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의 대상은 다양한 법령 및 분야에 걸쳐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내부통제기준과 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²⁶⁾

특히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사항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고시, 금융회사의 임원의 내부통제에 관한 대표이사 보고의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 및 보완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금융회사의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보완되는데, 이번에 발표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세부적인 사항들을 이사회와 경영진이 살펴보아야 할 내부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제25조의3(책무구조도) ①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
가. 「개인정보 보호법」

25) 조경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의 업무 범위에 관한 고찰 -통제위험의 분화의 관점에서-”, 상사판례연구 제36권 제3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23, 393면.

26) 최현정,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문제점, 향후 과제에 대한 小考”, 경제법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경제법학회, 2023, 84-85면.

-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 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라.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 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 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 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러. 「주택도시기금법」
 - 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 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 처.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커. 「공적자금상환기금법」
 - 터.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2.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법률 또는 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
3.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법률, 제1호 각 목의 법률 또는 제2호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

그러나 금융회사의 이사의 의무의 범위를 대통령령 및 고시로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일견 수범자에게 명확한 규범을 제시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을 수 있으

나, 내부통제의 목적 및 범위는 동태적이면서도 경영상황 및 환경, 개별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원칙 중심의 규제를 제시하되 사례로서 보완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발표된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도 그 사례로 볼 수 있으며, 각 지침과의 정합성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2. 업종별 지침 개발의 필요성

이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의 핵심은 책무구조도의 도입이라고도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책무구조도는 FCA의 핸드북상의 지정책무, 총괄책무에 대한 사항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²⁷⁾

그러나 책무구조도 도입에 있어 금융회사가 참고할만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며,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책무구조도 작성에 책임을 맡겨두고 있다. 또한 책무구조도 작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보완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 보완 기준은 명확하게 하기 어려워 재량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금융위원회 고시로 제정될 보완요구의 추가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²⁸⁾

FCA 핸드북의 SYSC(Senior Management Arrangements, Systems and Controls)의 24장은 고위 경영진과 인증의 방법: 지정책무의 할당에 대해 다루고 있다.²⁹⁾ 이 장에서는

27)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2023. 6.

28) 同旨로 조경준, 앞의 논문, 420면.

29) FCA 핸드북은 통합적인 관점에서 FCA의 관련 규정과 지침을 보여주고 있다. 핸드북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표 3〉 FCA 핸드북의 구성

구분	주요 내용
상위 수준의 표준	기업을 위한 원칙, 고위 경영진의 배치·시스템과 통제, 행동강령, 설립 요건, 인가자에 관한 원칙과 모범기준, 임직원의 적합성, 재무적 안정성과 시장의 확신, 교육과 역량, 일반조항, 수수료 매뉴얼
신중의무 표준	일반 신중의무 자료집, 업종별 신중의무 자료집
비즈니스 표준	비즈니스 행동 자료집, 업종별 비즈니스 행동 자료집, 시장에서의 행동, 상품 거버넌스 자료집, ESG 자료집
규제 프로세스	감독, 의사결정절차 및 제재 매뉴얼
구제	분쟁 해결, 소비자 구제 절차, 보상
전문가 자료집	집합투자제도, 신용조항 자료집, 소비자 신용 자료집, 투자 펀드 자료집, 전문직, 커버드 본드, 거래소

FCA가 규정한 고위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는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책무구조도 및 그에 따른 관리책임 의무 부여의 취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FCA 핸드북에서는 임원의 책무에 대한 사례 및 일반 회사, 소규모 기업, 해외법인에서의 책무 해당 여부에 대한 사례, 업종별 책무 해당 여부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 원칙중심규제를 수범기업이 적용하기 용이하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에서 참고한 영국의 제도의 경우, 고위 경영진에게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고위험이 예상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인증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³⁰⁾ 국내에서도 이러한 업종별 고위험에 대한 판단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지침의 제공 시, 해당 지침을 따를 경우 제재의 감면을 기대하도록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³¹⁾ 따라서 공적 제재 기관이 아닌 협회,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지침 발간을 권장하거나 지원할 필요가 있다.

2.3. 감독규정 구체화의 필요성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이사회와 경영진의 의무를 명시하고 그에 따른 책무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따른 감독 및 책임 식별 역시 이전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해외의 경우 업종별 지침 및 사례를 구체화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외에 감독지침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감독 지침을 원칙 중심으로 운영하되 구체화할 경우, 수범자의 자율성과 명확한 규범 준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적인 감독 지침의 제공을 위해서,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지침의 제공보다 규모가 작고 감독이 용이한 기관에 대한 감독 지침 또는 사례를 제공하는 방안도 착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대부분의 규제는 규제 준수의 역량이 있고 외부적 영향이 큰 대규모 회사에 먼저 적용하여 순차적으로 규모가 작은 회사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대규모 회사는 영위하는 사업이 복잡다기한 경우가 많아, 특히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내부통제의 사안을 제시하는 감독규정의 경우 대규모 회사에 먼저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상장, 투자설명서 및 공시	상장규정, 투자설명서 규정 자료집, 공시 지침 및 투명성 규정 자료집, 상품 공시 자료집
핸드북 가이드	업종별 참여자 지침
규정 가이드	집합투자 정보 가이드, 시행 가이드, 금융 범죄 관련 가이드 등
용어집	

30) 송지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고위 경영진 및 인증제도의 해외 입법례를 중심으로”, 은행법연구 제 16권 제2호, 한국은행법학회, 2023, 30면.

31) 영국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지민, 위의 논문, 29-30면.

일본 금융청의 감독지침의 경우, 검사 및 감독의 기본방침과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에 대한 진행 방식(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기본방침)을 2018년에 제시하고,³²⁾ 2022년에 대부업, 신용보증조합, 청산 및 이전 기관 등에 대한 종합 감독 지침을 적용하도록 한 후 2023년에 금융중개업자 및 신탁업자, 보험회사 등에 대해, 2024년부터 은행 및 금융상품사업자에 대해 종합 감독 지침을 적용하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본 금융청의 은행의 검사 및 감독에 관한 검사 및 감독의 종합 지침은 서류에서의 주의사항과 평가항목을 공개하고 있는데, 지배구조에 있어 지배구조별로 대표이사 및 이사, 이사회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두고 있으며 은행지주, 그룹사, 신규진입자, 대리점, 외국의 지점 등에 대한 사항도 별도로 두고 있어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원칙 중심의 체크리스트는 미국 법무부의 컴플라이언스 관련 양형기준과도 유사하여, 수범자가 최적의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수행하도록 하는데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원회가 있는 은행의 주요 지배구조 평가항목- 대표이사〉³³⁾

(1) 대표이사

법규 준수를 가장 중요한 경영 과제 중 하나로 간주하며, 대표이사가 법규 준수 체계 구축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까?

대표이사는 리스크관리 부서를 소홀히 하는 것이 기업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 부서를 중시하고 있습니까?

대표이사는 재무 정보 및 기타 기업 정보를 적절하고 적시에 공개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까?

대표이사는 내부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부감사의 목적을 적절히 설정하며, 내부감사 부서가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체제(내부감사부의 독립성 확보 포함)를 확립하고 정기적으로 그 효과를 확인합니까? 또한, 내부감사제도와 관련하여, 감사감사위원회 위원들의 감사나 당국의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제도를 개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또한 내부 감사 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까?

32) 金融庁, 金融検査・監督の考え方と進め方(検査・監督基本方針), 2018; 金融庁, コンプライアンス・リスク管理に関する検査・監督の考え方と進め方 | コンプライアンス・リスク管理基本方針, 2018.

33) 金融庁, 主要行等向けの総合的な監督指針, 令和6年2月, 해당 자료에는 대표이사, 이사 및 이사회, 감사위원회, 관리자, 내부감사부서, 외부 감사 활용에 관한 각각의 장이 있으나 분량상 대표이사 부분을 발췌하였다.

대표이사는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사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구성원에 의한 감사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대표이사는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반사회적 세력과의 관계를 단호히 차단하고 제거함으로써 금융기관 운영의 적절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까? 관련한 이사회에서 결정한 기본 방침이 은행 내외에서 선언 되었습니까?

2.4. 공시를 통한 지원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서 지배구조 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에 있어 내부통제위원회의 활동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 내역을 통해 실제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공시는 대동소이하게 업계 표준을 인용할 수 있어,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고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최근 ESG 공시제도의 법제화 추진 움직임과 더불어, 산업별 ESG 공시기준에서는 회사의 내부통제 구축에 관한 공시보다는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으로 내부통제의 결과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내부통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은 법령을 통해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율하고 지도할 수 있으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축은 결국 회사의 자율에 달린 것이며, 내부통제의 실효성은 결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법제화될 ESG 공시와 금융회사에 대한 규율의 결을 맞출 경우, 금융회사의 부담을 덜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산업별 ESG 공시 중 금융회사의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할 필요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 금융업 내부통제 관련 공시지표³⁴⁾

상업 은행	기업 윤리	사기, 내부자거래, 반독점, 반경쟁적 행위, 시장조작, 업무상 배임, 또는 기타 해당 금융업 법령과 관련된 법적 절차의 결과 발생한 금전적 손실 총액	정량적	보고통화
		내부고발자 정책 및 절차의 설명	논의 및 분석	해당없음

34) 위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SASB 기준 국문번역을 공개합니다.”, 2021. 11. 10. 및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SA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국문 번역본 추가 공개”, 2023. 1. 9.에 수록된 붙임 내 각 산업 기준을 인용하였다.

보험	투명한 정보 및 고객들을 위한 공정한 자문	신규 및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 전달 및 마케팅 관련 법적 절차로 인한 금전적 손실 총액	정량적	보고통화
		보험금 청구 대비 민원 비율	정량적	비율
		고객 유지율	정량적	비율
		고객에게 상품에 대해 설명하는 접근법 기술	논의 및 분석	해당없음
투자은행 및 중개	기업 윤리	사기, 내부자거래, 반독점, 반경쟁적 행위, 시장조작, 업무상 배임, 또는 기타 해당 금융업 법령과 관련된 법적 절차의 결과 발생한 금전적 손실 총액	정량적	보고통화
		내부고발자 정책 및 절차의 설명	논의 및 분석	해당없음
	전문가적 진실성 (integrity)	투자 관련 조사, 소비자가 제기한 민원, 개인 민사소송 또는 기타 감독기관의 제재를 받은 기록이 있는, 위험관리 보수를 받는 종업원(covered employee)의 (1) 수 및 (2) 비율	정량적	수, 백분율
		선관주의의무 등 전문가적 진실성과 관련된 조정 및 중재의 당사자별 건수	정량적	수
		선관주의의무 등 전문가적 진실성과 관련된 법적 절차의 결과 발생한 금전적 손실 총액	정량적	보고통화
		선관주의의무 등 전문가적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접근법의 설명	논의 및 분석	해당없음

V. 결론

기업지배구조에는 정답이 없으며, 가장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회사가 스스로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최근 국제적으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규율은 기본적인 사항의 법적 규율과 함께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연성규범에 의한 규율과 시장에 의한 선택에 맡겨지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율은 금융회사의 공공적 특성과 금융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에 의해, 강화된 통합적 지배구조 규율 및 내부통제체계 구축 의무에

대한 입법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기존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규율하지 못한 사항에 관한 반성으로도 보인다.

책무구조도에 대한 자율적 작성과 이에 대한 규제는 규정중심의 금융규제에서 원칙중심의 금융규제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도 이해된다. 원칙중심의 규제를 위해서는 원칙을 따르기 위한 업계에서의 자발적인 관행이 축적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행이 축적되기 전까지는 일정한 규정을 제시하여 향후 원칙중심규제로의 전환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원칙중심규제로의 전환과 실효성있는 자발적 내부통제 구축을 위해서는 규정의 제공이 각 회사의 경영환경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규제의 편의성을 위한 획일적인 금융규제보다는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한 금융규제가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금융회사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지원하여 금융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參考文獻

정기승, 「금융회사 지배구조론」, 홍문사, 2007.

김병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에 관한 검토”, 금융법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금융법학회, 2016.

김성균,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에 관한 법적 소고”, 상사판례연구 제34권 제4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21.

김유경,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역할_2) 내부통제 및 부정위험 감독, 올바른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역할”, 삼정KPMG, 2017.

김흥기, “내부통제의 작동 원리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 상사판례연구 제36권 제4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23.

박영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보험법연구 9권 2호, 한국보험법학회, 2015.

송지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고위 경영진 및 인증제도의 해외 입법례를 중심으로”, 은행법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은행법학회, 2023.

안수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체제 확립방안 모색 -은행을 중심으로-”,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71호, 법무부, 2015.

원동욱, “세계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금융기관 지배구조”, 기업법연구 제25권 2호, 한국기업법학회, 2011.

이효섭, “증권업 시스템리스크 진단 및 대응과제”, 이슈보고서 20-13, 자본시장연구원, 2020.

정순섭, “금융회사의 조직규제”, 상사판례연구 제24집 제2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11.

정영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상 고려사항 및 앞으로의 개선사항”, 금융감독연구 제3권 제1호, 금융감독원, 2016.

정준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규제체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을 중심으로-”, 경제법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경제법학회, 2021.

정혜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의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CGS Report 5권 7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5.

조경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의 업무 범위에 관한 고찰 -통제위험의 분화의 관점에서-”, 상사판례연구 제36권 제3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23.

최현정,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문제점, 향후 과제에 대한 小考”, 경제법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경제법학회, 2023.

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 “세계내부감사인협회(IAA) 3선 모델”, 202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Financial Corporate Governance Code)」 시행”, 2014. 12. 24.

_____,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행정지도 존속기한 연장”, 2015. 12. 24.

_____,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에 주력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3. 6. 22.

_____,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2013. 6. 17.

_____, “내년 말부터 금융회사 임원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3. 12. 8.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2023. 6.

법률신문,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연내 통과 가능성”, 2023. 11. 25.

한국거래소, 기업 ESG 등급, <https://esg.krx.co.kr/contents/02/02020000/ESG02020000.jsp>.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모범규준”, 2021.

金融庁, 金融検査・監督の考え方と進め方 (検査・監督基本方針), 2018.

金融庁, コンプライアンス・リスク管理に関する検査・監督の考え方と進め方 | コンプライアンス・リスク管理基本方針, 2018.

金融庁, 主要行等向けの総合的な監督指針, 令和6年2月.

〈Abstract〉

Key Contents and Challenges of the Revised Financial Companies Corporate Governance Act

Yoonjae Jang*

In December 2023, the amendment to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inancial Companies Governance Act') was passed in Korea.

The amendment to the Financial Companies Governance Act primarily mandates the governance entities to faithfully perform the monitoring of internal controls.

While the pre-amendment Financial Companies Governance Act only mandated the establishment of internal control standards, the amended Act imposes a duty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within the law. This legalizes the duty of directors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which has been accepted in case law, and appears to be a desirable legislation. Moreover, the amended Financial Companies Governance Act differentiates the roles of internal control by function and specifies responsibilities, signifying progress in establishing advanced governance. However, with the obligation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being established through case law, continuous additional regulations could burden the operation of financial companies' governance and potentially limiting the interests of financial consumers.

This paper reviews the amendments to the Financial Companies Governance Act, recognizing its positive role in the transition to a governance guide and principle-based regulation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while suggesting the need for the development of sector-specific guidelines, the specification of supervisory regulations, and support for a disclosure system that allows stakeholders to verify the results of internal controls. It is hoped that through the support of financial authorities and the voluntary efforts of the industry, the development of internal control systems suitable for each company's circumstances will be achieved, leading to the healthy

* Shin&Kim, LLC., Advisor/Head of ESG Research, Ph.D. in Law.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market.

♣ 주제어(Key Words)

금융회사, 지배구조, 내부통제, 책무구조, ESG

Financial Institutions, Financial Companies, Corporate Governance,
Internal Control, Responsibilities Map, ESG

논문투고일자: 2024년 03월 04일

심사의뢰일자: 2024년 03월 04일

게재확정일자: 2024년 03월 11일

DOI : 10.24886/BLR.2024.03.38.1.21